

# 2022년도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회의록

2022년도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의 심의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회의일시 : 2022. 10. 14(금) 14:00~17:00
- 회의장소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타워 51층 회의실
- 심의결과

### 1. 규칙개정안건

안전수	원안 가결	수정 가결	조건부가결	심의 보류	차기위원회 심의	부결
16건	16건	-	-	-	-	-

### 2. 일반의결안건 · 보고안건

일반의결안건					보고안건	
안전수	원안 가결	수정 가결	심의 보류	부 결	안전수	원안 접수
-	-	-	-	-	2건	2건

- 붙 임 :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  
2. 보고사항 결과

2022. 10. 17.

위원장	한국 전력 거래소	정 동 희
위원	한국 전력 거래소	김 흥 근
	산업통상자원부	강 정 택
	서울과학기술대	유 승 훈
	건국대학교	노 재 형
	법무법인 화우	류 병 채
	한국 전력 공사	박 헌 규
	한국 중부발전	박 영 규
	S K E & S	단 희 수
간사	한국 전력 거래소	옥 기 열



【붙임 1】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

**안건명 : 초과급전 공급가능용량 정산식 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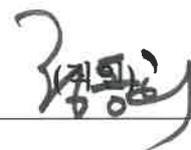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22-4-1호						
개최일시	2022년 10월 14일 14:00~17:00						
제안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p><input type="checkbox"/> 입찰량을 초과하여 급전지시한 발전기의 용량정산금이 이 중으로 산정되지 않도록 초과급전 용량정산금 산정식 변경</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초과급전지시로 변경입찰이 초기입찰보다 큰 경우 ○ 용량정산금(㉑) : 50MW-h - MIN[(초기입찰, 변경입찰)] ○ 초과급전 용량정산금(㉒) : 70MW-h - {(변경입찰+초과지시량) - MIN(초기입찰, 변경입찰, <b>발전량</b>)} </td> <td>초과급전지시로 변경입찰이 초기입찰보다 큰 경우 ○ 용량정산금(㉑) : 50MW-h - MIN[(초기입찰, 변경입찰)] ○ 초과급전 용량정산금(㉒) : 20MW-h - {(변경입찰+초과지시량) - MIN(초기입찰, 변경입찰, <b>Max(연료량, 발전량)</b>)}</td> </tr> <tr> <td>⇒ 전체 용량정산금은 120MW-h (㉑+㉒)로 정산</td> <td>⇒ 전체 용량정산금은 70MW-h (㉑+㉒)로 정산</td> </tr> </tbody> </table> <p><input type="checkbox"/> 적용시기(부칙) : '22년 9월 1일부터 소급적용</p>	현행	개정(안)	초과급전지시로 변경입찰이 초기입찰보다 큰 경우 ○ 용량정산금(㉑) : 50MW-h - MIN[(초기입찰, 변경입찰)] ○ 초과급전 용량정산금(㉒) : 70MW-h - {(변경입찰+초과지시량) - MIN(초기입찰, 변경입찰, <b>발전량</b> )}	초과급전지시로 변경입찰이 초기입찰보다 큰 경우 ○ 용량정산금(㉑) : 50MW-h - MIN[(초기입찰, 변경입찰)] ○ 초과급전 용량정산금(㉒) : 20MW-h - {(변경입찰+초과지시량) - MIN(초기입찰, 변경입찰, <b>Max(연료량, 발전량)</b> )}	⇒ 전체 용량정산금은 120MW-h (㉑+㉒)로 정산	⇒ 전체 용량정산금은 70MW-h (㉑+㉒)로 정산
현행	개정(안)						
초과급전지시로 변경입찰이 초기입찰보다 큰 경우 ○ 용량정산금(㉑) : 50MW-h - MIN[(초기입찰, 변경입찰)] ○ 초과급전 용량정산금(㉒) : 70MW-h - {(변경입찰+초과지시량) - MIN(초기입찰, 변경입찰, <b>발전량</b> )}	초과급전지시로 변경입찰이 초기입찰보다 큰 경우 ○ 용량정산금(㉑) : 50MW-h - MIN[(초기입찰, 변경입찰)] ○ 초과급전 용량정산금(㉒) : 20MW-h - {(변경입찰+초과지시량) - MIN(초기입찰, 변경입찰, <b>Max(연료량, 발전량)</b> )}						
⇒ 전체 용량정산금은 120MW-h (㉑+㉒)로 정산	⇒ 전체 용량정산금은 70MW-h (㉑+㉒)로 정산						
주요 토의내용	<p><input type="checkbox"/> 전체위원 <u>원안가결</u> 찬성</p> <p>○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p>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22년 10월 14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

**안건명 : 전기사업자 채무불이행 및 파산에 따른 비상시 전력시장 운영 규칙개정(안)**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22-4-2호
개최일시	2022년 10월 14일 14:00~17:00
제안자	·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채무불이행 조치사항 추가) 판매사업자 채무불이행 계획을 통지한 경우 전력거래소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고 의무화</li> <li><input type="checkbox"/> (비상시 전력시장 운영방안 마련) 전기사업자의 채무불이행·파산 시 전력거래 정지와 비상위원회 심의사항에 채무불이행 해소 계획 신설</li> <li><input type="checkbox"/> (채무이행 상황을 고려한 전력시장 정지 선언 보류) 채무이행 보완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여 전력시장 선언 정지를 보류할 수 있는 조항 신설</li> <li><input type="checkbox"/> (시장 이자율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연체이자 규정 개정</li> </ul>
주요 토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전체위원 <u>원안가결</u>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li> </ul> </li> </ul>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22년 10월 14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

**안건명 : 전력거래 정산계좌 등록·변경 서류 및 인정기준 규칙개정(안)**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22-4-3호
개최일시	2022년 10월 14일 14:00~17:00
제안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정산계좌 등록서류 제출에 관한 근거규정 이동(제1.2.2조→제4.3.6조 4항)으로 정산계좌 등록·변경서류 일원화 관리 및 등록·변경서류 명확화</li> <li><input type="checkbox"/> 전자문서(사본) 서면요건 신설(열람·재현가능성) 및 결함기준 강화</li> <li><input type="checkbox"/> 정산계좌 변경 시 우편접수(별지 44-1호 서식) → 온라인 신청 원칙 (단, 별지 44-1호 서식 접수도 가능)</li> <li><input type="checkbox"/> 채권양도 후 계좌변경 신청 규정 명확화 : 회원사가 아닌 양수인의 경우 → 양수인은</li> </ul>
주요 토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전체위원 <u>원안가결</u>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li> </ul> </li> </ul>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22년 10월 14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

**안건명 : 전력거래대금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 범위에 관한 규칙개정(안)**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22-4-4호						
개최일시	2022년 10월 14일 14:00~17:00						
제안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p><input type="checkbox"/>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정산금에 대하여 전력거래대금 채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 제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45%;">현행</th> <th style="width: 40%;">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 제한</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반응자원 거래정산금 채권</li> <li>▪ 공급인증서 거래정산금 채권</li> </ul>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반응자원 거래정산금 채권</li> <li>▪ 공급인증서 거래정산금 채권</li> <li>▪ 재생 발전량 예측제도정산금 채권</li> </ul> </td> </tr> </tbody> </table> <p><input type="checkbox"/> 별지 제42-1호, 제42-2호 채권양도통지서 서식 별첨(위임장)의 이탈자 정정 :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 양도인은 양수인에게</p>	구분	현행	개정(안)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반응자원 거래정산금 채권</li> <li>▪ 공급인증서 거래정산금 채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반응자원 거래정산금 채권</li> <li>▪ 공급인증서 거래정산금 채권</li> <li>▪ 재생 발전량 예측제도정산금 채권</li> </ul>
구분	현행	개정(안)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반응자원 거래정산금 채권</li> <li>▪ 공급인증서 거래정산금 채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반응자원 거래정산금 채권</li> <li>▪ 공급인증서 거래정산금 채권</li> <li>▪ 재생 발전량 예측제도정산금 채권</li> </ul>					
주요 토의내용	<p><input type="checkbox"/> 전체위원 <u>원안가결</u> 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li> </ul>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22년 10월 14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

**안건명 : 전력거래자 등록 신청서류 규칙개정(안)**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22-4-5호						
개최일시	2022년 10월 14일 14:00~17:00						
제안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p><input type="checkbox"/> 제22-4차 규칙개정 제안안건* 관련 정산계좌 등록서류 제출에 관한 근거규정 이동(제1.2.2조→제4.3.6조 4항)으로 정산계좌 관련 제출서류 항목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 (제안안건명) 전력거래 정산계좌 등록변경 서류 및 인정기준 규칙개정(안)</p> <p><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는 조항번호 변경 제5조 제2항 → 제8조 제7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40%;">현행</th> <th style="width: 45%;">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1.2.3조 (등록 신청서류)</td> <td>                     1. 전력거래자 등록 신청서                      2. (판매발전구역전기)사업허가증 사본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시장은행 통장 사본 및 사용 인감 증명서                 </td> <td>                     1. 전력거래자 등록 신청서                      2. (판매발전구역전기)사업허가증 사본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삭제)                 </td> </tr> </tbody> </table>	구분	현행	개정(안)	제1.2.3조 (등록 신청서류)	1. 전력거래자 등록 신청서 2. (판매발전구역전기)사업허가증 사본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시장은행 통장 사본 및 사용 인감 증명서	1. 전력거래자 등록 신청서 2. (판매발전구역전기)사업허가증 사본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삭제)
구분	현행	개정(안)					
제1.2.3조 (등록 신청서류)	1. 전력거래자 등록 신청서 2. (판매발전구역전기)사업허가증 사본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시장은행 통장 사본 및 사용 인감 증명서	1. 전력거래자 등록 신청서 2. (판매발전구역전기)사업허가증 사본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삭제)					
주요 토의내용	<p><input type="checkbox"/> 전체위원 <u>원안가결</u> 찬성</p> <p>○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p>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22년 10월 14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

**안건명 : 수요반응자원 활성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22-4-6호
개최일시	2022년 10월 14일 14:00~17:00
제안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p><input type="checkbox"/> (국민DR 발령조건 추가) 동·하계 수급대책기간에 공급예비력 및 기온에 따른 국민DR 발령조건 추가</p> <p style="text-align: center;">&lt; 국민DR 발령조건 &gt;</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① (현행) 공급예비력 6.5GW미만 예상시                  ② (현행) 미세먼지 19개 권역 중 3개 이상 나쁨 예상시                  ③ (신설) 동·하계 수급대책기간의 공급예비력이 적정 공급예비력 미만 예상시                  ④ (신설) 동·하계 수급대책기간의 기온이 기준전망 적용 기온 미만 또는 초과 예상시</p> </div> <p><input type="checkbox"/> (국민DR 일일 발령 한도 확대) 발령 한도 1일 1회 → 2회</p> <p><input type="checkbox"/> (국민DR 참여조건 완화) 참여조건 70kW → 200kW</p> <p><input type="checkbox"/> (표준·중소형DR의 자발적 참여기회 확대) 피크수요DR 낙찰시 공급예비력 조건 추가</p> <p style="padding-left: 20px;">○ (낙찰조건 추가) 적정 공급예비력 미만 예상 시</p> <p><input type="checkbox"/> (제주지역 신뢰성DR 발령기준 명확화) 제주 수급비상 ‘준비’ 또는 ‘관심’ 단계, 공급예비력 100MW 미만 또는 운영예비력 80MW 미만을 규칙에 명시</p>
주요 토의내용	<p><input type="checkbox"/> 전체위원 <u>원안가결</u> 찬성</p> <p style="padding-left: 20px;">○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p>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22년 10월 14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

**안건명 : Fast DR(주파수 수요반응자원) 제도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22-4-7호									
개최일시	2022년 10월 14일 14:00~17:00									
제안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p><input type="checkbox"/> (Fast DR 2단계 추가확보) 발령기준을 2단계로 확대하여 59.65Hz (2단계 기준주파수)에서 동작하는 750MW를 추가 확보</p> <p style="text-align: center;">&lt; 개정내용 &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40%; text-align: center;">현행</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준주파수: 59.85 Hz 필요용량: 750 MW</td> <td style="text-align: center;">1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준주파수: 59.85 Hz 필요용량: 750 MW</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2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준주파수: 59.65 Hz 필요용량: 750 MW</td> </tr> </tbody> </table> <p><input type="checkbox"/> (Fast DR 2단계 정산기준) 실적(발령횟수) 기준 5,700 ~ 2,850 원/kW-10분 차등 보상(기본급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1회 발령: 100%(5,700원/kW-10분), 2회 이상 발령: 회차별 50%(2,850원/kW-10분) 지급</li> <li>○ 다만, 발령조건 이외(59.65~59.68Hz)에서 UFR 오동작으로 수요감축시 기본급 20%(1,140원/kW-10분) 보상</li> <li>○ 수요감축 미발령 시 운전유지비로 기본급 20% 지급</li> </ul> <p><input type="checkbox"/> 추가등록(익년4월) 신설 ⇒ 전력거래는 익년 6월 ~ 11월</p> <p><input type="checkbox"/> 수요감축 시행 후 회복시간 15분 보장</p>	현행	개정(안)		기준주파수: 59.85 Hz 필요용량: 750 MW	1단계	기준주파수: 59.85 Hz 필요용량: 750 MW		2단계	기준주파수: 59.65 Hz 필요용량: 750 MW
현행	개정(안)									
기준주파수: 59.85 Hz 필요용량: 750 MW	1단계	기준주파수: 59.85 Hz 필요용량: 750 MW								
	2단계	기준주파수: 59.65 Hz 필요용량: 750 MW								
주요 토의내용	<p><input type="checkbox"/> 전체위원 <u>원안가결</u> 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li> </ul>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22년 10월 14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

**안건명 :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혼합자원 반영을 위한 규칙개정(안)**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22-4-8호
개최일시	2022년 10월 14일 14:00~17:00
제안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집합전력자원이 태양광, 풍력의 혼합구성이 가능함에 따라 발전원별 (태양광, 풍력) 각 설비이용률 10%를 예측 유효성 기준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측유효성 인정기준 : 설비용량, 예측발전량, 실제발전량 및 정산금 산정 기준</li> <li>○ (현행) 설비이용률 10% 이상인 시간대에서 예측유효성 인정</li> <li>○ (개정) 태양광, 풍력 각 발전원별 설비이용률이 10% 이상인 경우에 예측유효성을 인정</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등록시험 중단 기준에 출력제어를 추가(현행: 고장, 정비 → 개정: 고장, 정비, 출력제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고장, 정비 등으로 설비용량이 20MW 이하가 되는 시간대가 168시간(7일)을 초과하는 경우 시험 중단</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서류* 제출 시점 현실화) 등록시험 통과 후 → 등록시험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 시장은행 통장사본, 사용인감증명서</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2기 이상의 자원을 하나의 자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중복으로 삭제</li> </ul>
주요 토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전체위원 <u>원안가결</u>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li> </ul> </li> </ul>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22년 10월 14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

**안건명 :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참여자 등록기준 및 정산금 관련 규칙개정안**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22-4-9호											
개최일시	2022년 10월 14일 14:00~17:00											
제안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input type="checkbox"/> 직접전력거래자(직접PPA 참여자) 자격 신설, 등록의무·신청·변경·말소 등 등록기준 개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50%;">현행</th> <th style="width: 50%;">개정(안)</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td> <td>           직접전력거래자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 발전사업자(직접전력거래를 목적으로 발전기를 설치한 자)         </td> </tr> </table>	현행	개정(안)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직접전력거래자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 발전사업자(직접전력거래를 목적으로 발전기를 설치한 자)							
	현행	개정(안)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직접전력거래자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 발전사업자(직접전력거래를 목적으로 발전기를 설치한 자)										
<input type="checkbox"/>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 도입)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 용어 신설, 정산·계량 기준 마련 <input type="checkbox"/> (용어 신설) 송·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는 직접 PPA거래(이하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 관련 용어 신설 <input type="checkbox"/> (정산·계량 기준 개정)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에 대한 계량설비 설치 및 정산금 산정기준 마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30%;">구분</th> <th style="width: 70%;">개정내용</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용어 신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 용어 신설</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판매(구역전기)사업자의 부가정산금</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PPA 부가정산금’에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 분은 미포함</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직접PPA 부가정산금 산정</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PPA 부가정산금 및 단가 산정시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 부분 제외</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발전기 계량</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 발전기 계량설비 설치 위치 명확화</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직접PPA 초과발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에 대한 초과발전량 반영 하지 않음</li> </ul> </td> </tr> </table>	구분	개정내용	용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 용어 신설</li> </ul>	판매(구역전기)사업자의 부가정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PPA 부가정산금’에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 분은 미포함</li> </ul>	직접PPA 부가정산금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PPA 부가정산금 및 단가 산정시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 부분 제외</li> </ul>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발전기 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 발전기 계량설비 설치 위치 명확화</li> </ul>	직접PPA 초과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에 대한 초과발전량 반영 하지 않음</li> </ul>
구분	개정내용											
용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 용어 신설</li> </ul>											
판매(구역전기)사업자의 부가정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PPA 부가정산금’에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 분은 미포함</li> </ul>											
직접PPA 부가정산금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PPA 부가정산금 및 단가 산정시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 부분 제외</li> </ul>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발전기 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 발전기 계량설비 설치 위치 명확화</li> </ul>											
직접PPA 초과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에 대한 초과발전량 반영 하지 않음</li> </ul>											

주요 토의내용

전체위원 원안가결 찬성

○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22년 10월 14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

**안건명 :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한계용량 검토 관련 규칙개정(안)**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22-4-10호				
개최일시	2022년 10월 14일 14:00~17:00				
제안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p> <input type="checkbox"/> 현행 향후 5년간 연도별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한계용량을 검토하고 있으나,  <input type="checkbox"/> 제주지역에서 출력제어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발전한계용량 검토 실효성이 낮은 상황  <input type="checkbox"/>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한계용량을 운영전망으로 개정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 <p><b>제5.9.8조(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한계용량 검토)</b> 전력거래소는 정상 및 비정상 상황하에서의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하여 별표3에 따라 향후 5년간 연도별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한계용량을 검토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단, 육지계통의 적용시기는 추후 별도로 정한다.</p> </td> <td style="padding: 5px;"> <p><b>제5.9.8조(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운영전망 검토)</b> 전력거래소는 정상 및 비정상 상황하에서의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하여 별표3에 따라 향후 5년간 연도별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운영전망을 검토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단, 육지계통의 적용시기는 추후 별도로 정한다.</p> </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p><b>제5.9.8조(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한계용량 검토)</b> 전력거래소는 정상 및 비정상 상황하에서의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하여 별표3에 따라 향후 5년간 연도별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한계용량을 검토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단, 육지계통의 적용시기는 추후 별도로 정한다.</p>	<p><b>제5.9.8조(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운영전망 검토)</b> 전력거래소는 정상 및 비정상 상황하에서의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하여 별표3에 따라 향후 5년간 연도별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운영전망을 검토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단, 육지계통의 적용시기는 추후 별도로 정한다.</p>
현행	개정(안)				
<p><b>제5.9.8조(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한계용량 검토)</b> 전력거래소는 정상 및 비정상 상황하에서의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하여 별표3에 따라 향후 5년간 연도별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한계용량을 검토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단, 육지계통의 적용시기는 추후 별도로 정한다.</p>	<p><b>제5.9.8조(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운영전망 검토)</b> 전력거래소는 정상 및 비정상 상황하에서의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하여 별표3에 따라 향후 5년간 연도별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운영전망을 검토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단, 육지계통의 적용시기는 추후 별도로 정한다.</p>				
주요 토의내용	<p> <input type="checkbox"/> 전체위원 <u>원안가결</u> 찬성  <input type="checkbox"/>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         </p>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22년 10월 14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직인)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

**안건명 : PFR-ESS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규정 개정(안)**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22-4-11호
개최일시	2022년 10월 14일 14:00~17:00
제안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용어정의 신설) 전기저장장치의 설비특성을 고려하여 운전 모드(정상상태, 과도상태, 회복상태) 및 속도조정률 정의 신설</li> <li><input type="checkbox"/> (보조서비스 특성자료 신설) 전기저장장치의 속도조정률을 운전모드(정상·과도·회복상태) 별로 세분화, 전기저장장치의 1차예비력 참여기준에 관한 특성자료 신설</li> <li><input type="checkbox"/> (보조서비스 참여기준 신설) 전기저장장치의 1차예비력서비스 참여기준 신설(⇒ 항목별 기준값은 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에 위임)</li> <li><input type="checkbox"/> (1차예비력서비스량 산정기준 신설) 1차예비력서비스 참여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속도조정률을 구분하여 1차예비력 서비스량(GFRQ) 산정</li> <li><input type="checkbox"/>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가 보조서비스 불이행 시, 보조서비스 정산단가 산정에서 제외(불이행 판정 시점부터 적용)</li> <li>○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 자료제공 규정 명확화</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경과조치) 본 규정 개정 후 특성시험 및 계통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설비에 적용</li> </ul>
주요 토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전체위원 <u>원안가결</u>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li> </ul> </li> </ul>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22년 10월 14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

**안건명 : 공급과잉에 유연한 대응을 위한 최소발전용량 규정 개정(안)**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22-4-12호
개최일시	2022년 10월 14일 14:00~17:00
제안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input type="checkbox"/> (최소발전용량 용어 개정) 최소발전용량은 설비의 안정운영 및 환경규제 준수할 수 있는 최소출력으로 용어 정의 개정 <input type="checkbox"/> (환경제약 관련 내용 삭제) 최소발전용량에 환경제약을 반영하도록 수정됨에 따라, 환경제약 정의, 환경제약 입찰, 발전계획 수립 등 관련 조항은 삭제
주요 토의내용	<input type="checkbox"/> 전체위원 <u>원안가결</u> 찬성 <input type="checkbox"/>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22년 10월 14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

**안건명 :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유지기능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안)**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22-4-13호						
개최일시	2022년 10월 14일 14:00~17:00						
제안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p><input type="checkbox"/> (자료 제출의무화) 시장규칙內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계통연계 유지기능 보유여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p> <p>○ (제출자료) 연계구분에 따른 계통연계 유지기능 제출자료 항목*</p> <p>* 제출 가능 자료 : KS 시험성적서, 제작사 설계치, 현장 설비 설정치 증빙 사진 등</p> <p style="text-align: center;">&lt; 재생에너지 인버터 성능기준 제출자료(안) &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제출자료 항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송전 연계</td> <td>- 시장규칙 별표3 11.0(주파수), 18.2(전압) 증빙가능 자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배전 연계</td> <td>-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13조(분리시간) 및 24조(계통연계유지) 증빙가능자료 - LVRT(전압), FRT(주파수)기능 포함된 개정 KS시험성적서</td> </tr> </tbody> </table> <p>○ (시행시기) 공고일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p>	구분	제출자료 항목	송전 연계	- 시장규칙 별표3 11.0(주파수), 18.2(전압) 증빙가능 자료	배전 연계	-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13조(분리시간) 및 24조(계통연계유지) 증빙가능자료 - LVRT(전압), FRT(주파수)기능 포함된 개정 KS시험성적서
구분	제출자료 항목						
송전 연계	- 시장규칙 별표3 11.0(주파수), 18.2(전압) 증빙가능 자료						
배전 연계	-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13조(분리시간) 및 24조(계통연계유지) 증빙가능자료 - LVRT(전압), FRT(주파수)기능 포함된 개정 KS시험성적서						
주요 토의내용	<p><input type="checkbox"/> 전체위원 <u>원안가결</u> 찬성</p> <p>○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p>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22년 10월 14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

**안건명 : 통신회선 규격 규칙개정(안)**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22-4-14호	
개최일시	2022년 10월 14일 14:00~17:00	
제안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input type="checkbox"/> 안정적 계통데이터 취득을 위하여 고대역폭 회선 사용이 가능하도록 연계취득용 회선규격의 대역폭 상한 삭제	
	현행	개정(안)
	데이터급 56Kbps~1.544Mbps 전용회선	데이터급 56Kbps 이상 전용회선 (시리얼 또는 TCP/IP*)
주요 토의내용	<input type="checkbox"/> 전체위원 원안가결 찬성 <input type="checkbox"/>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22년 10월 14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

**안건명 : 급전전화, 비상용 대체 통신수단 규칙개정(안)**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22-4-15호
개최일시	2022년 10월 14일 14:00~17:00
제안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input type="checkbox"/> 345kV 무인변전소의 관할 급전분소 급전전화설치 근거 마련 <input type="checkbox"/> 제주지역 비상용 대체 통신수단 설치기준 위성급전전화 설치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지역의 시송전 선로 발·변전소의 무인개소의 경우 관할 급전분소에 위성급전전화를 설치</li> <li>○ 무인변전소의 경우 설치 제외</li> </ul>
주요 토의내용	<input type="checkbox"/> 전체위원 <u>원안가결</u>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li> </ul>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22년 10월 14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

**안건명 : 비상용 대체 통신수단 설치기준 규칙개정(안)**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22-4-16호
개최일시	2022년 10월 14일 14:00~17:00
제안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input type="checkbox"/> 위성중심국 구축·운영 및 주파수 임대를 전력거래소 단독 시행으로 변경(전력거래소와 송전사업자 → 전력거래소) <input type="checkbox"/> 위성중심국 구축·운영에 대한 전력거래소 단독 시행 변경에 따른 위성전화 설치기한 유예 요청
주요 토의내용	<input type="checkbox"/> 전체위원 <u>원안가결</u> 찬성 <input type="checkbox"/>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22년 10월 14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 보고사항 결과

보고내용	보고결과
▪ (제1호) 전차(제22-3차) 규칙개정위원회 결과보고	○ 원안 접수
▪ (제2호)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안) 보고	○ 원안 접수
▪ (기타) <u>위원회 공정성 제고 관련 추진계획 보고</u> ✓ - (위원의견) 규칙위, 비용위 등 전력시장 위원회 운영체계 전반에 관한 종합 검토 후 '23년 내 개선안 마련 <del>필요</del> <b>필요</b> .	

▶ **추진과제** **리딩**.